

[참고1]

##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

| 연구분야(5개) |           | 대분류(22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과학기술     | 자연        | NA. 수학<br>NB. 물리학<br>NC. 화학<br>ND. 지구과학(지구/대기/해양/천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생명        | LA. 생명과학<br>LB. 농림수산식품<br>LC. 보건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인공물       | EA. 기계<br>EB. 재료<br>EC. 화공<br>ED. 전기/전자<br>EE. 정보/통신<br>EF. 에너지/자원<br>EG. 원자력<br>EH. 환경<br>EI. 건설/교통 |
| 인문사회과학   | 인문사회학     | HF. 인문학<br>HG. 사회과학<br>HH. 문화예술체육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인간 과학과 기술 | OA. 뇌과학*<br>OB. 인지/감성과학<br>OC.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인문사회과학분야 중 뇌과학 분야에 한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공 분야로 인정

※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 2023년 개정판

##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기준

### □ 제출 대상자

-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
  -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
- 단,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
  - ※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, 개별 사안에 따라 해외범죄경력서 징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, 해당 해외범죄경력서 제출

### 【해외범죄경력서 제출 면제 기준】

-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
-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
-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
-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\*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
  - \* 면제대상 포함
-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\* 합법 체류한 사람
  - \*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
-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,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(단,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)
  - ※ (예시)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
- 천재지변,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\*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·사무소장·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(단,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)

[참고3]

##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

### □ 제출 대상자

#### 〈사증 신청 시〉

-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\*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(전자사증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제출)
  - \*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(장기체류자격)를 의미(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도 장기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)
-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(C-4-1~4)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
- 과거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 출국 후 새로운 장기체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

#### 〈외국인등록 시〉

-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
-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

#### 〈체류허가 신청 시〉

-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
- 장기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중 16.3.2. 이후 사증 및 체류 허가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
-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한 경우
  - \*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아님  
(출국행선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결핵 고위험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)